

영등포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9.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학교의 학생 중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례 제정 자치구 현황

- 장학기금(8개구)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
- 장학재단(5개구) : 광진구, 송파구, 은평구, 금천구, 강서구

■ 주요내용

- 안 제3조에는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금재원 : 구의 출연금, 전입금, 이자수익금

-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함
 -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 위원은 구청 국장 3명, 구의원 1명, 외부위원 6명
 - 임기는 2년
-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안 제13조에 장학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성적우수장학금, 지역인재육성장학금, 특기장학금,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타구에서도 장학기금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0
 년부터 실시예정인 고교 선택제 도입으로 우리구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근거로 영등포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장학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교육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13조(장학금의 종류)의 조문 관련

「교육기본법」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9. 9.

보고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